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0. 11.

보 건 복 지 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16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16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17개 보건복지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삭제한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한다.

제5조(「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제1호, 같은 항 제8호 및 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2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6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원아 구강검진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15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1.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2015년 1월 1일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5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서류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삭 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6조 및 별표 6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1. ~ 8.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9. 제37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 행의 개설허가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10. 제38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 행의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11. 제39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 행의 휴업·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12. ~ 14. (생략)	12. ~ 14. (현행과 같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15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삭제>
5. 제43조에 따른 휴업 등의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삭제>
6. 제45조 및 별표 18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삭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1. 제24조에 따른 기록의 내용: <u>2015년 1월 1일</u>	<u><삭 제></u>
3. 제27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u>2015년 1월 1일</u>	<u><삭 제></u>

**전문회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1. 삭제 <2016. 12. 27.>	(현행과 같음)
2. 제9조에 따른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2014년 7월 1일	<u><삭 제></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1. 제20조에 따른 대여자금의 사후관리내용: 2015년 1월 1일	<삭 제>
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3.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4. 제26조의5제1항·제3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가 제출 및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제27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현행과 같음)

6. 제29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7. 제30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자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2015년 1월 1일	(현행과 같음)
2. 제11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방법·절차: 2015년 1월 1일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소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장의 보고사항: 2017년 1월 1일	<삭 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2(규제의 재검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 1. 5., 2019. 7. 5.>	제36조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2. ~ 7.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8. 제29조의11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9. ~ 10.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11. 제31조 및 별표 11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2. 삭제 <2020.2.5.>	9.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1. 삭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삭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제13조에 따른 제공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현행과 같음)
2. 제16조 및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삭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규제의 재검토)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②-----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신청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첨부 서류의 범위 : 2015년 1월 1일	<삭제>
4. (생략)	(현행과 같음)
5. 제33조에 따른 필수 건강진단 항목: 2015년 1월 1일	<삭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 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삭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활동지 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 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삭제>